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민식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무공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내용으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523호, 2023. 7. 11. 공포) 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됨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법률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75세 이상으로서 법 제42조제7항”을 각각 “법 제42조제7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4조(진료 비용의 감면) ① (생략)	제64조(진료 비용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<u>75세 이상으로서 법 제42조제7항</u>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)의 100분의 60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 제42조제7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<u>75세 이상으로서 법 제42조제7항</u>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을 하지 않는다.	③ ----- <u>법 제42조제7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~ ⑥ (생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691